

# 논문 심사 규정

제정 : 2013. 10. 10.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(사)한국유통법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에 게재 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논문게재와 편집)**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게재신청논문의 게재여부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.

**제3조 (논문심사의뢰)** ① 편집위원회는 게재를 신청한 논문에 대하여 각각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심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 학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·제출한 축탁논문 및 학술발표논문 등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②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 이외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③ 게재신청논문의 집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.

**제4조 (심사기준)**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.

1. 논문체제와 내용의 적합성
2. 연구내용의 독창성
3. 연구방법의 결과의 명확성
4.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
5. 연구결과의 기여도

**제5조 (심사판정)** 심사위원은 제4조의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및 그 이유를 출판담당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한다.

1.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경우: '수정 없이 게재'
2. 간단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: '수정 후 게재'
3. 대폭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: '수정 후 재심사 필요'
4. 전면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: '게재를 유보함'
5. 논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: '게재 불가'

**제6조 (논문게재여부결정)** 게재 신청한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의 심사위원에 의한 논문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수정·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.

**제7조 (심사결과통보)** ① 출판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,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.

② 심사위원 사이에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.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에 관하여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

**제8조 (비밀유지의무)** 논문 등의 심사에 관하여는 사람 또는 관여했던 사람은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